

3. 建築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055號 1990.7.16 公布.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공장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제3호·제6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역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공장용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제6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의 규모: 용도지역별로 당해 지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것.

제90조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물(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5배). 다만,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으로부터 4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한다.

제92조제1항의 표중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띄어야 하는 건축선 부분 등”란을 “적용대상 건축선”란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의 표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해공장 (전용공업 지역 및 일반공업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 한다.)	6 이상(준 공업지역에 서는 3 이 상)		모든 건축선
-------------------------------------------------------------------	---------------------------------	--	-----------

제92조제2항의 표중 공해공장·위험물제

조소·위험물저장소(공해공장은 전용공업 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해 공장· 위험물제작 소·위험물 제작소(공 해 공장은 전용공업지 역 및 일반 공업지역에 서 건축하 는 것을 제 외하며, 당 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 한다.)		4.0 이상 (준공업 지역에 건축하 는 공장 은 2.0 이상)	3.0 이상 (준공업 지역에 건축하 는 공장 은 1.5 이상)
---------------------------------------------------------------------------------------------------------------------------------------	--	------------------------------------------------------	------------------------------------------------------

[부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
 - 1. 연립주택
 - 2. 다세대주택
 - 3. 아파트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 ②(조례위임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제 66조제2항제1호 및 제90조제3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 ③(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改正理由 ◇

中小企業의 立地難을 緩和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工場을 自然綠地地域 중 基地造成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準工業地域안에 工場을 建築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基地안 空地의 범위를 縮小하며, 이와 아울러 住宅建設을 촉진하기 위하여 商業地域 안에서 共同住宅 建築時 隣接基地境界線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距離를 地域實情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하는 등 現行 規定上의 未備點을 補完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 가. 아파트형工場을 현재는 一般住居地域·準住居地域 및 近隣商業地域에서 主務部長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建設部長官이 同意하면 地域別로 延面積合計 5千 내지 1萬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設置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自然綠地地域에도 市長·郡守가 指定·公告하는 區域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이와 아울러 아파트형工場의 規模制限은 市長·郡守가 地域 및 工業用地의 需給狀況에 따라 自律的으로 판단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中小企業의 立地難을 緩和할 수 있도록 함(令 第66條 第2港).
- 나. 共同住宅을 建築할 때에는 日照權確保를 위하여 都市計劃上 모든 用途地域에서 建築物높이를 隣接基地境界線으로부터 띄운 距離의 2倍 이하로 建築하도록 一律的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都心 土地利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商業地域안에서는 距離制限을 緩和하여 당해 지역의 住宅普及率 등 地域實情에 따라 隣接基地境界線으로부터 띄운 距離의 4倍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높이로 함(令 第90條 第3項 가目).
- 다. 公害工場을 建築할 경우 현재 準工業地域에서는 道路境界線으로부터 6미터 이상 띄어 建築하여야 하나, 一般工業地域안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準工業地域의 경우에는 다른 用途地域의 2분의1 수준으로 緩和하여 道路境界線에서 3미터 이상을 띄어 建築하게 함으로써 用途地域間 規制의 衡平을 도모하고, 工場用地의 土地利用度를 높이도록 함(令 第92條).

〈법제처 제공〉